<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 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80509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18.05.24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5.05.30 master@powerofmath.kr

www.powerofmath.kr

「수학의 힘 1

정 보 공 개 서

「㈜피오엠교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피오엠교육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 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 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 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 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912호(도곡동, 인스토피아빌딩)]

[전화: 02-3013-1013] [팩스: 02-3013-444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3013-1013]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별첨 서류
-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 호 | (주)피오엠교육 | 영업표지 | | ŕ | 누학의 힘 | | |
|------------|-----------------|-------------------------------------|--------------|-----|--------------|--|--|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 l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912호(도곡동, 인스토피아빌딩) | | | | | |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 대표팩스번호 | | |
| 2017.11.29 | 2017.12.08 | 홍정환 | 02-3013-1013 | | 02-3013-4442 |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6583771 | 사업자등록번호 | | 190 | 0-87-01002 | | |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 서울시 강남구 (| 언주로 120, 912호(<u>5</u> | 목동, 인스토피아빌 |
| 대표이사 | 홍정환/ | . +1 ~1 +1 | 딩) | | |
| (임원) | (주)피오엠교육 | 수학의힘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홍정환 | 02-3013-1013 | 02-3013-4442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서울시 강남구 (| 언주로 120, 912호(도 | -곡동, 인스토피아빌 |
| 사내이사 | 김재호/ | 수악의임 [| 딩) | | |
| (임원) | (주)피오엠교육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홍정환 | 02-3013-1013 | 02-3013-4442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서울시 강남구 (| 언주로 120, 912호(도 | -곡동, 인스토피아빌 |
| 사내이사 | 장승필/ | 사회이회 | 딩) | | |
| (임원) | (주)피오엠교육 | 수학의힘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홍정환 | 02-3013-1013 | 02-3013-4442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수학의힘』 | |
| 상 호 | 『수학의힘』 <u>캠퍼스</u> | |
| 상표(서비스표) | 一个站山包 | 출원번호 : 40-2022-0211691 출원일자 : 2022.11.18. 등록번호 : 40-2199429-0000 등록일자 : 2024.05.23 |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2년 | 364,448 | 203,927 | 160,521 | 979,826 | 84,007 | 73,867 |
| 2023년 | 324,199 | 162,311 | 161,888 | 1,095,285 | 115,047 | 86,518 |
| 2024년 | 714,780 | 433,019 | 281,761 | 1,164,689 | 179,961 | 119,873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르 | 싫되이 | 사업경력 | | | | | | |
|-----|--------------|---------------------------|-------------|---------|--|--|--|--|
| 이름 | 현 직위 | 기간 | 재직 회사 및 직위 | 현 담당 업무 | | | | |
| | | 2020.03.18. ~현재 | ㈜피오엠교육 대표이사 | | | | | |
| 홍정환 | 대표이사 | 2018. 03 ~ 020.03.17 | ㈜피오엠교육 사내이사 | 회사업무 총괄 | | | | |
| | | 2017. 12. ~ 2018. 3. 29 | ㈜피오엠교육 대표이사 | | | | | |
| 김재호 | ירו וויטו זר | 2020.03.18. ~현재 | ㈜피오엠교육 사내이사 | 위사어ㅁ 과기 | | | | |
| 검색모 | 사내이사 | 2018. 3. 29. ~ 2020.03.17 | ㈜피오엠교육 대표이사 | 회사업무 관리 | | | | |
| 자스피 | 71 I L | 2020.03.18. ~현재 | ㈜피오엠교육 사내이사 | 선 나이 마리 | | | | |
| 장승필 | 감사 | 2017. 12. ~ 2020.03.17 | ㈜피오엠교육 감사 | 회사업무 관리 | | | | |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직전년도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 | 수(명) | 직원수(명) |
|---------------|-----|------|--------|
| 시점 | 상근 | 비상근 | 역전구(8) |
| 2024년 12월 31일 | 3 | - | 5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명칭 상표 (서비스표) | 권리 내용 |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 (등록 신청자) | 존속 기간 만료일 |
|---------------------------|------------------|-------------------|-----------------|--------------------|-----------------|
| 一个 站山包 | -1 BUT L | 출원일자 : | 출원번호 : | | |
| | 가맹점상 호로 사용 | 2022.11.18. | 40-2022-0211691 | ㈜피오엠교육 | |
| | | 등록일자 : | 등록번호 : | | - |
| |) | 2024.05.23 | 40-2199429-0000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수학의힘』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8년 05월 1일

(직영학원을 시작한 날 : 없음)

2. 『수학의힘』 연혁

☞ 『수학의힘』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주)피오엠교육 | 수학의힘 | 김재호 | 2018. 05 ~ 2020.03.17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84, 4 층(명일동, 동산빌딩) |
| (주)피오엠교육 | 수학의힘 | 홍정환 | 2020.03.18. ~ 2020.08.26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84, 4 층(명일동, 동산빌딩) |
| (주)피오엠교육 | 수학의힘 | 홍정환 | 2020.08.27. ~ 2024.06.31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71길 32, 5 층 3호(명일동, 환타지아빌딩) |
| (주)피오엠교육 | 수학의힘 | 홍정환 | 2024.07.01. ~ 현재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912 호(도곡동, 인스토피아빌딩) |

3. 『수학의힘』업종

| 영업표지 | 업 | 종 |
|----------|--------|-----------|
| 수학의힘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구위의임 | 교육(교과) | 수학학원 |

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단 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지역 | 2022.12.31. | | 2023.12.31. | | | 2024.12.31. | | | |
|----|-------------|------|-------------|----|------|-------------|----|------|------|
| 시역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11 | 11 | - | 13 | 13 | - | 18 | 18 | - |
| 서울 | 1 | 1 | - | 1 | 1 | - | 2 | 2 | - |

| 부산 | - | - | - | 1 | 1 | - | 2 | 2 | - |
|----|---|---|---|---|---|---|---|---|---|
| 대구 | 1 | 1 | - | 1 | 1 | - | 1 | 1 | - |
| 인천 | 1 | 1 | - | 1 | 1 | - | 1 | 1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6 | 6 | - | 7 | 7 | - | 9 | 9 | - |
| 강원 | 1 | 1 | - | 1 | 1 | - | 2 | 2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1 | 1 | - | 1 | 1 | - | 1 | 1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단위: 개)

| 사업연도 | 연초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22년 | 8 | 3 | - | - | - | 11 |
| 2023년 | 11 | 2 | - | - | - | 13 |
| 2024년 | 13 | 5 | - | - | - | 18 |

6. [수학의힘]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수학의힘]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직전 사업연도(2024년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 정기준

(단위: 개/천원, 부가세미포함)

| |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
|----|----------------|-------------------------|--------------|------------------|---------------------------|------------------|---------------------------|-------|
| 지역 | 2024년말 가맹점수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 비고 |
| | イで省下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 3.3m²당 | 상한 | 면적 3.3m ² 당 | 하한 | 면적 3.3m ² 당 | |
| 전체 | 18 | - | - | - | - | - | - | 산정 불가 |



| 서울 | 2 | - | - | - | - | - | _ | - |
|----|---|---|---|---|---|---|---|-------|
| 부산 | 2 | - | - | - | - | - | - | 5곳 미만 |
| 대구 | 1 | - | - | - | - | - | - | 5곳 미만 |
| 인천 | 1 | - | - | - | - | - | - | 5곳 미만 |
| 광주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ı | - | ı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경기 | 9 | - | - | - | - | - | - | 산정불가 |
| 강원 | 2 | - | - | - | - | - | - | 5곳 미만 |
| 충북 | - | - | - | 1 | - | ı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경남 | 1 | - | - | - | - | - | - | 5곳 미만 |
| 제주 | - | - | - | - | - | - | - | - |

[►] 당사의 수학의힘 가맹점은 매출을 확인할 수 없고 당사에서 교재도 공급하지 않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8. [수학의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
|-------|------------|---------------|
| 2024년 | 18 | 1,054 |

-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구분 | 수단 | 수단 | 지출 비용(단 | 비고 | | |
|-------|-------|-----------------|---------|-------|-----|----|
| 下正 | 구긴 | 구인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미끄 |
| 합계 | | | 4,955 | 4,955 | | |
| (비공개) | (비공개) | 2024.01~2024.12 | (비공개) | (비공개) | | |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의 상호 및 담당지점 또는 담당부서 | 예치기관의 소재지 | 예치기관의 전화번호 |
|-------------------------|---------------------|---------------|
| 신한은행 굽은다리역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45-8 | 02-3426-0581 |

2) 가맹금 예치절차

- ☞ 귀하는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 및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해당 영업점에서 가맹금 입금용 에스크로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는 안내받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 귀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 관련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법」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법」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이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수학의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별도 구입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보증금 가맹본부 |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B |

1) 최초 가맹금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구분 | 구분 금액 | | 지급 기한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 합지 | # | 165,000/110,0 00/66,000 | | | | (예외조건) | |
| | A타입 | 165,000 | | | | 귀책사유 없는 | |
| 가맹비 | B타입 | 110,000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반환 안됨 |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 해지 시 | |
| | C타입 | 66,000 | | | | | 정산 후 반환 |
| 신규 교 | 1육비 | 가맹비에 포함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반환 안됨 |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 개점 전 교육 미 이수시 반환 | |

▶ A타입 - 전국 지역 중 메인지역을 특정하며, 그 외 지역은 B타입으로 구분합니다.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반환 조건 |
|---------|-------|-------|-------------------|---------|
| 합계 | 1,000 | | | |
| 계약이행보증금 | 1,000 | 계약체결과 |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 계약 종료 시 |



| | 동시에 예치 |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 정산 후 반환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분 | A타입 금액 | B타입 금액 | C타입 금액 | 비고 |
|----------|---------|---------|--------|---------|
| 합계 | 166,000 | 111,000 | 67,000 | |
| 가맹비 | 165,000 | 110,000 | 66,000 | 부가세포함 |
| 개점 전 교육비 | - | - | - | 가맹비에 포함 |
| 계약이행보증금 | 1,000 | 1,000 | 1,000 | 부가세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1]쪽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 3.3㎡당금액 | 지급 기한 | 비고 |
|-------|------|-------|---------------|-----------|---------------------------|
| 합계 | 가맹본부 | 1,870 | - | - | - |
| 초도물품비 | 가맹본부 | 1,870 | - | 계약체결 후 즉시 | 바인더, 오답노트, 풀이노트, 창.사교재 |

☞ 당사는 인테리어 및 집기류 구입 일체를 진행하지 않으며, 귀하가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귀하는 감리 및 도면 제공의 대가로 3.3㎡ 당 금이십만원(₩200,000 / VAT별도)을 공사 착수 전일까지 당사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당사 조언 요청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요청이 있는 경우 |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 →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 | 요청이 없는 경우 |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 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 가할 수 없습니다.



※※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학원에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기준 | 계약·채용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당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
| 강사 | -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 수학학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춘 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 가맹학원 자율적으로 결정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기준은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 가맹본부 | 220 | 익월 5일 | 반환안됨 |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 - |
| 콘텐츠이용료 | 가맹본부 | 110 | 익월 5일 | 반환안됨 | 수학의힘 | 교육위원에 |



| (본사제공 콘텐츠) | | | | | 콘텐츠사용에 대한 대가 | 선정된 경우 |
|----------------|------|---|--------------------------------------|------|-----------------|---|
| 설명회 | 가맹본부 | 오픈설명회 무료/ 서울경기 550 그 외 660 | 설명회 신청시 | 반환안됨 | 설명회 준비 대가 | - |
| 출장교통비 | 가맹본부 | 진단2회 무료/ 서울경기무료 충청 165 그 외 220 | 출장일당일 | 반환안됨 | 교통비+식대 | 무료횟수를 초과한 교육,진단 출장시 발생 |
| 광고·판촉 | 가맹본부 | 광고. 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 명세서 수령 후 14일 이내 | 반환안됨 | 광고·판촉비로 비용소요 | -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실비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교육 및 훈련요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간판류 임차료 | | 해당 없음 | | |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 | 해당없음 | - | - | - |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20% |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금전 지급 기일 경과 시 |
| SMS/MMS 사용료 | 가맹본부 | 실비 |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 반환안됨 | SMS.MMS 사용료 | 분기별로 합산하여 청구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기준: 2024년) | 내용(단위:천원)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감독항목 | 내용 | | 비고 |
|--------------|--|----|-----------------|
| 학원운영 전반감독 |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류 취급 여부,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 수시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
| 재고관리 회계처리 | 물류의 구입과 학원생관리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감독 | 十年 | 있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재가맹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재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운영하는 학원실적에 따라 재가맹비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거 나 원할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 사는 귀하에게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가맹사 업 양도시점 당시 최초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금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최초의 가맹계 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맹금에서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가맹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에서 최초의 계약기간 중 잔여기간의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 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귀하는 새로운 대체수단으로 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 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가)의 경우에 준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 귀하가 운영하는 『수학의힘』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갱신 시 재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당사와 귀하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의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당사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의 비용은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의 종료 즉시 당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 채무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상호 및 상표, 기타 구조물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 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스템 및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매뉴얼 등을 즉 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을 넘겨 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귀하가 계약 종료에 따른 위의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체1일당 3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계약종료 후 조치 미이 행시의 위약금조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수학의힘]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수학의힘]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수학의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수학의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 시 책임 | 비고 |
|--|-----------------|---|------------------------------|
| <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물품중단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문의: 가맹사업본부 (02-3013-1013) |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 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 · 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 거래상대방 |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
| 경쟁업체 | | 타 브랜드 학원에 공급 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 |
|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 당사가 시장안 상품 · 용역 미 다시 ㄸ느 다시이 지저 |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 의 학원이 아닌 다른 곳 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 | 물품중단 |

| |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이하 어조 버이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동일한 업종 범위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수학학원 가맹사업 | 수학의힘 | - |

☞ 귀하의 영업지역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의 [수학의힘]과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를 추가 입점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및 방법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기준 | 설정방법 |
|-------------------------------------|-------------|
|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
|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 별도 표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수학의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 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수학의 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해당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 2024 | 100% | 0% | 0% | 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4 | 100% |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수학의힘』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
|---|-----------------------|
|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맹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 우 | 33조 1항 1호 |
| ○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33조 1항 1호 |
| ○ 위법행위로 가맹학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 33조 1항 1호 |
| ○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33조 1항 1호 |
| ○ 사전승인 없이 가맹학원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 33조 1항 1호 |
|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 부하는 경우 | 33조 1항 1호 |
| ○ 로열티, 물품대금, 시스템사용료, 공사견적금액, 기타 본 계약에 따라 당사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5% 이상을 연체하는 경우 | 33조 1항 1호 |
|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3조 1항 1호 |
| ○ 제16조(가맹학원에 대한 지도감도) 2항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의 점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33조 1항 1호 |
| ○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게을리 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33조 1항 1호 |
| ○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33조 1항 1호 |
| ○ 가맹학원관리 프로그램 등 설비 및 기기(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3조 1항 1호 |
| ○ 교재공급과 대금지급(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3조 1항 1호 |
| ○ 강사의 채용(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3조 1항 1호 |
| ○ 영업시간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 33조 1항 1호 |
|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당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33조 1항 1호 |
| ○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33조 1항 1호 |



|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33조 1항 1호 |
|---|-----------|
|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 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33조 1항 1호 |
| ○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 33조 1항 1호 |
| ○ 기타 가맹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에 따른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3조 1항 1호 |
| ○ 귀하가 개점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을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 | |
| ○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33조 2항 1호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33조 2항 2호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 33조 2항 3호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33조 2항 4호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3조 2항 5호 |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 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 33조 2항 6호 |



|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33조 2항 7호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33조 2항 8호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33조 2항 9호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은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귀하가 가맹학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학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학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 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 영권 이전 완료 | 문의:가맹사업본부 (02-3013-1013)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금의 경우 양수인이 잔존계약기간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맹비를 당사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고 계약내용에 따라 재가맹비만 지급하면 되나,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학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학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리행사 시킬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학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의 사후통지 및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 를 당사에 통지 → 요 건 검토 → 승인통지 (통지받은 후 1개월 이내) | 교육비 지급 및 교육수료 |
| 업무위탁 | 불가 | - | | |
| 대리행사 | 불가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 범위

☞귀하는 계약의 존속 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수학의힘]과 동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의 영 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 09:00~22:00 | 주6일 이상, 월26일 이상 | 문의:가맹사업본부 (02-3013-1013) |
|-------------|-----------------|-----------------------------|
|-------------|-----------------|-----------------------------|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합리적인 사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하기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휴업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휴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학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5_명 이상 | 직접 근무 | 직접근무하거나 대리인 사용 | |

4) 가맹본부의 가맹학원(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학원 방문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프로그램 및 가맹학원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7 H | 고나그 사건 | 부딛 | 비율 | H-FL T4+1 | | |
|-----|-----------|------------|-----------------------|---------------------|----|--|
| 구분 | 광고 성격 |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 | 분담 절차 | 비고 | |
| | 상품광고 | | 및 가맹학원의 ト 1/n씩 부담 | 광고계획→ 가 맹학원 통보 → | | |
| 광 고 | 상품광고+판촉활동 | (1개점포부담부 | 분=전체광고비/(+전체가맹점수) | 비용입금→광고 시행 | | |



| 맹학원 모집광고 | 100% | - | |
|----------|------|------|--|
| 개별광고 | - | 100% | |

-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으며, 귀하 는 당사가 위와 같이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전국 규모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규모의 광고 및 판촉활 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총금액을 전체 직영학원 및 가맹가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 판촉의 경우도 가맹점부담액은 판촉비 총금액을 전체 직영학원 및 가맹학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 광고 및 판촉비용이 많아질 경우 본사가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 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2. 위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당사의 시스템, 매뉴얼, 제조, 판매, 영업, 계약 및 점포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지할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노하우 및 이들이 수록된 운영교범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2.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35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5항, 제21조 2항(자점사입)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계약을 중도에 일방 적으로 해지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및 사업자명의를 귀하 외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물류(교재)를 공급받거나, 자신이 임의로 물류(교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 에 걸리는 기간, 비용
-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 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99m²(약30평) 기준)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당사 전체 시공 시 | 약 40일 내외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 D-40(1일) | |
| 사업설명 및 상담 |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 D-39(1일)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D-26~38(13일) | |
| 최종협의 | - 임대차 계약 체결 | D-25(1일) | |
| 가맹계약체결 |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D-24(1일) | ·Ⅳ. 가 맹 점 사 업 자 의 |
| 점포 실측 및 설계 |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 D-22~23(2일) | N.기 8 급시 답시 그 부담 4) 번 항목 참조 |
| 각종 공사 |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 D-2~21(20일) | ,, |
| 개점준비마무리 |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 D-1(1일) | |
| 개점 |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 D-day |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학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 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는 귀하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없음 : 당사에서는 보수교육 이외에 별도로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필수여부 |
|-------|--|--------------|-------|------|
| 신규 교육 | 회사소개, 주방요리방법 ,점포운영의 노하우, 고객응대 서비스교육 등 | 이론 및 실습교육 | 개점 전일 | 필수 |
| 보수교육 | 본사정책 안내, 제품 품질관리 교육, 제품 평가회 등 | 실습교육 | 추후 공지 | 필수 |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 비고 |
|-------|-------------------------------|---------|-------------------------|
| 신규 교육 | 일 | 가맹비에 포함 | - |
| 보수교육 | 교육기간은 당사가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지정 | 실비 | 경우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비용을 부담하여 당사에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교통비 등 교육비용 이외의 제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 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주)피오엠교육

☞ 귀하는 신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 | |
| 2 | | | |
| 3 |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 | - |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3013-101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 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가맹본부 | 주식회사 피오엠교육 | | | | 영업표지 | 수학의힘 |
|------|---|---|-------|-------|---------|------|
| 제고함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 | | | | |
| 제공확인 | 작성해주세요 | ⇒ | | | | |
| 제공일시 | 년 | 월 | 일 | 시 | 제공받은 장소 | |
| 주 소 | | | | | | |
| 성 명 | | | 서명 또는 | = (인) | 전화번호 |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 No. | 상호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가맹본부는 | 가맹희망자에게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 제공하였으며, | 가맹희망자는 |
|--------|-----------|--------|---------|-------------|---------|--------|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인- | 근가맹점현황 | 문서를 수령하 |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7 | 가맹본부 : 주식회사 피오엠교육 대표이사 | (인 |
|---|------------------------|------------------|
| | 가맹희망자: 성명 | 서명 또는 <i>(</i> 인 |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가맹본부 | 주식회사 피오엠교육 | | | 영업표지 | 수학의힘 |
|------|---|-------|-----|---------|------|
| 제공확인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 | | | |
| | 작성해주세요 ⇒ | | | | |
| 제공일시 | 년 월 | 일 | 시 | 제공받은 장소 | |
| 주 소 | | | | | |
| 성 명 | | 서명 또는 | (인) | 전화번호 |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 | 가맹희망자 장라 | 점포 예정지 | |
|--|----------|--------|--|
|--|----------|--------|--|

| No. | 상호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본부 : 주식회사 피오엠교육 대표이사 | | _(인) |
|------------------------|--------|------------------|
| 가맹희망자: 성명 | _서명 또는 | : (인) |



가맹금 예치 신청서

(앞 쪽)

| | | | 처리기간 | | |
|---|-----------|-----------|---------|--|--|
| 가맹금예치신청서 | | | 즉시 | | |
| | 상호(가맹점)명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 | |
| | 주소(사무소) | (전화: |) | | |
| 가맹 본부 | 상호명(영업표지) | | | | |
| | 성명(대표자) | | | | |
| | 주소(사무소) | (전화: |) | | |
| 예치가맹금 | | ₩ (금 | 원 정) | | |
| 신청인의 계좌 | | | | | |
| 가맹본부의 계좌 | | / 예금주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사 | 명 또는 인) | | |
| 예치기관의 장 | | | | | |
| | | 귀하 지점장 | | | |

별첨1.

초도물품 리스트

(VAT별도)

별첨2. 2024년 2023년 재무제표

(주)미오엠교육

2022년 재무제표